

인천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나719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나7198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가단2284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고상현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서고은

변론 종결2021. 10. 12.

판결 선고2021. 11. 16.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가단22848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9. 4. 23.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9. 4. 23. 접수 제282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B: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는 ① 2014. 9. 12.자 97,000,000원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대여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원금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투자금반환청구 및 선택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② 2014. 10. 15.자 10,000,000원에 관하여 대여금청구를 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①, ②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 ① 2014. 9. 12.자 97,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인 원금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투자금반환청구를 인용하고(다만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② 2014. 10. 15.자 10,000,000원에 관하여는 대여금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위 인정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위 ① 2014. 9. 12.자 97,000,000원에 관한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포함)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이 불복한 위 부분(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포함)에 한정된다2).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B에 대한 2014. 9. 12.자 97,000,000원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원고가 2014. 9. 12. 지급한 97,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 B은 이 사건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투자금 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 B은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선박을 해체하여 고철로 매각한 다음 폐선 처리하여 담보물을 멸실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담보물에 의하여 피담보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액 상당인 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송금한 97,000,000원은, 해상에서 파일항타작업을 하는 원고의 남편 E가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피고 B의 남편 D과 동업약정을 맺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2씩 지분을 갖기로 하면서 출자한 동업자금 내지 투자금이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달리 원금보장약정을 한 바 없고, 동업 내지 투자로서의 성격상 원고도 이 사건 선박의 폐선 처리로 인한 원금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동업자금 내지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 B이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동업자로서 2015. 8.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비 및 관리비로 피고 B이 지출한 합계금 196,616,433원의 1/2인 98,308,216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선박을 고철로 매각하고 받은 대금 57,000,000원의 1/2인 2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9,808,216원(= 98,308,216원 - 28,5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피고 B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행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이 사건 선박을 폐선 처리한 것은 이 사건 선박이 다른 선박에 의한 충돌 사고로 파손된 후 침몰되었기 때문이지, 피고 B에게 담보물 멸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4. 9. 12. 피고 B에게 지급한 97,000,000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금에 대한 대가가 고정적이지 않고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대여금이라기보다는 피고 B(또는 D)이 이 사건 선박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의 1/2을 분배받기로 하고 지급한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B의 주장도 투자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원고에게 투자금을 일정부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 B이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투자관계가 종료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금 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투자자가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투자금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투자원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하였음을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부선(바지선) 업계에서 동업을 하는 경우 출자금을 낸 동업자는 동업 목적물인 부선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선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 대신 출자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고, 부선이 사고 등의 이유로 파손될 경우 수리비 또는 폐선의 위험을 같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또한 피고 B은 원고(E)가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피고 B(D)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을 뿐, 단지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0970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선박의 영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함이 없이 피고 B 또는 D이 자신의 명의로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선박의营业을 전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 B의 수익금 정산 내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이 사고 등으로 파손되었음을 알리고 수리비의 부담을 요청하였다거나 이 사건 선박의 해체, 고철 매각 및 폐선 처리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내지 승낙을 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단지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투자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 사고 등에 의한 이 사건 선박의 파손, 침몰, 멸실 등이라 하더라도,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면 2018. 1.경 이후 원고와 연락이 두절되며 동업관계가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선박은 2018. 8.경 뺑소니 사고로 선체가 파손되어 침몰되었다는 것이므로(2020. 8. 7.자 준비서면 제8쪽, 2021. 7. 26.자 준비서면 제7쪽), 위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사고와 관련한 손실을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피고 B은, 위 사고 이전에도 2015. 7.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와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그 1/2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상세내역은 2021. 7. 26.자 준비서면 제10~11쪽과 같다).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5. 14.자 수익금 1,830,410원을 지급할 때에는 전체 매출(임대료)에서 급여, 용접비, 보험료(공제료)를 공제한 다음 그 1/2을 수익금으로 산정하고, 2015. 7. 1.자 수익금 4,000,000원을 지급할 때에는 전체 매출(임대료)에서 급여를 공제한 다음 그 1/2을 수익금으로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공제될 비용이 전체 매출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 B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리비와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그 주장 금액에 이른다거나 피고 B이 원고 또는 E에게 반복하여 수리비와 관리비의 부담을 요청하여 왔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⑥ 만약 원고가 원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피고 B으로서는 2019. 4. 10.경 원고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받았을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폐선 처리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것이나, 피고 B은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9. 4.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 ⑦ 피고 B은 투자는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에 반하는 원금보장약정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의사합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엄격히 인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에는 '투자' 내지 '투자계약'에 관한 별다른 정함이 없고,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는 '투자성'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면서(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참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같은 법 제55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금융투자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가 아닌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원금보장약정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의 금지규정을 곧바로 유추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에 관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40547 판결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금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투자금반환청구를 인정하므로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밑에서 제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은 부모인 D과 피고 B의 주거지로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부득이 자신이 위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에게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각엽

판사현선혜

판사백규재

별지

1) 실질적으로는 제1심에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이다.

2) 대여금청구, 투자금반환청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참조), 제1심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4. 9. 12.자 97,000,000원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 B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한다.

3) 원고와 피고 B이 위 투자금반환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투자금반환채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택의 폐선 처리 사실을 알고 피고 B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9. 4. 11.에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